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가합100104 판결 [공사대금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울 담당변호사 조훈목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한종훈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2. 8. 23.까지 연 6%의, 2022.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6,312,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철골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경 피고와,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여수시 D에 있는 E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전체 공사대금을 2,563,457,377원¹⁾으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인 2,027,144,998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인 536,312,379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공일 다음날인 2020. 11. 5.부터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물량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최종 대금을

2,033,7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29,354,998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360,002원(= 2,033,715,000원 - 2,029,354,998원)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36,000원을 합한 금액은 4,796,002원(= 4,360,000원+436,000원)인데, 원고가 정산합의서, 청산각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금액에 관하여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11, 14, 15, 20,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33,7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563,457,377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9. 11. 1.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견적내역서(갑 제5호증) 중 ‘검토합계’란의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563,457,37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견적내역서의 ‘내역별 단가조정 후 하도급계약예정’란의 공사별 단가는 ‘검토합계’란의 공사별 단가보다 감액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견적내역서 하단의 참조사항에는 ‘상기 내역의 모든 항목은 단가 계약이며, 물량은 최종 SHOP도면(최종 실시도면)에 의거한 물량정산 조건임(예상은 물량이 줄어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피고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배포한 현장설명서(갑 제3호증)에도 ‘공사내용 예상물량’, ‘설치물량 증감에 의한 공사금액 정산 (단 제출한 단가로 적용하여 정산)’ ‘최종 물량 정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견적내역서의 검토합계란 기재 금액이 2,563,457,37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이 2,563,457,377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견적내역서에 따른 합의의 취지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 완공 후 최종 물량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2019. 10. 1.자로 ‘물품 공급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제12조 제2항은 본 계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시 부수되는 부대계약(특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된 부대계약(특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의 건설공사에서 원고에게 배당되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592,432,500원, 공급(임대)물품: 현설내역 적용, 비고: VAT 별도금액임

2. 제1항의 공사대금은 피고의 사정(물량변동, 공사기간,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제1항의 공사대금은 노무비, 숙식비, 현장관리비 및 기타 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사급 자재는 제외).

4. 피고는 제2항의 공사대금의 변동 내지 인건비(숙박비) 등의 변동이 있을시 공사대금을 증감할 수 있다.

5. 본 계약 체결 후 견적착오, 오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감을 요구할 수 없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10차례에 걸쳐 시공된 공사의 물량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계약변경합의서에는 ‘계약변경사항을 제외한 원계약서 및 이전 변경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게 ‘최종 정산 관련 정산 합의서 및 청산각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투입비 발생 부분에 한하여 정산하고자 하니 현장설명서 및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정산합의서 및 청산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건을 내용증명 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이 문건은 2021. 1. 15.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2021. 1. 25.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1. 3. 19. 원고에게 10차 변경계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날인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21. 3.경 협의하여 작성한 10차 계약변경합의서(작성일이 2021. 2. 1.로

기재됨)에는 계약금액 2,237,086,500원, 공급가액 2,033,715,000원, 부가가치세는 203,37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단가와 수량이 기재된 계약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당초 견적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종 시공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한 점, 이후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물품 공급계약서 및 각 계약변경합의서는 모두 시공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위 물품공급계약서(을 제1호증)에 ‘산정된 공사대금에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이 사건 공사 대금을 2,033,7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노무비와 장비비는 피고가 직접 근로자들과 장비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실제로 직불한 노무비와 장비비의 합계는 1,762,406,786원{노무비 1,394,029,786원(부가가치세 미발생)+장비비 368,37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271,308,214원(2,033,715,000원-1,762,406,786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474,643,032원(부가가치세 포함)이어서 위에서 본 원고에게 지급할 돈 271,308,214원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3차 계약변경합의부터는 ‘터치업’이라는 항목을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해 왔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일반 도급계약이 아닌 노무도급에 가까우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톤당 단가가 아닌 원고가 투입한 총 노임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최초 계약서인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된 부대계약(특약)서에 공사대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 체결 후 견적착오, 오산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감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ii) 견적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각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점, iii) 피고는 ‘철골설치(touch-up)’ 항목은 구조검토비, 가설구대현장제작을 대체할 항목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견적내역서에 있던 구조검토비, 가설구대현장제작 항목이 각

계약변경합의서의 각 계약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3차 계약변경합의서의 계약내역서부터 ‘철골설치(touch-up)’ 항목이 기재되기 시작하였고, 설령 위 항목이 시공물량 및 단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을 증액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두 달 이상 지난 시점에 10차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몇 차례 ‘철골설치(touch-up)’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여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지출비용에 비례하여 정산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공사대금 일부라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어 일단 일부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원이라도 추가 정산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10차 계약변경합의서에 서명하였을 뿐 종국적인 정산 합의서가 아니라 중간 정산 합의 과정을 기록한 서류에 불과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10차 계약변경합의서에 첨부된 각 공사내역은 견적내역서에 기재된 각 공사내역과 주요내용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고, 기재된 수량만큼 공사가 완공된 것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단가는 견적내역서의 ‘내역별 단가조정 후 하도급계약예정’란 단가와 대체로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10차 계약변경합의서 등에 추가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문구가 없는 점, 10차 계약변경합의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이 2020. 11. 4.임을 전제로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잔존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거절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이 2,033,7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직불한 노무비와 장비비의 합계는 1,762,406,786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266,948,212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360,002원(2,033,715,000원-1,762,406,786원-266,948,212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정산합의서, 청산각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정산합의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의무가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하거나 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2원²⁾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로서 2021.

3.경 10차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확정된 이후인 2021. 4. 1.(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확정적인 공사대금은 최종 물량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에 정해지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갑 제3호증, 을 제1,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장설명 당시 최종정산 관련하여 하자보증증권 제출시 기성지급 조건으로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물품공급계약서의 대금결제에 관한 제9조 제1항은 피고의 대금결제 및 지급방식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점, 10차 계약변경합의서가 작성된 정확한 일자는 불분명하나 최소한 피고가 이를 발송한 2021. 3. 19.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잔액의 지체발생일은 2021. 3.이 지난 2021. 4. 1.로 본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풍, 판사 정종건, 판사 이학인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인지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으나, 이것이

견적내역서(갑 제5호증) 기재 금액인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2. 4.20.자 준비서면 13면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음이분명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